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

-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(2023~2027) -

2023. 1. 27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그간의 고령자 고용정책 평가 및 업무추진여건 ····· 2

1. 고령자 고용동향 ····· 2
2. 주요 정책 평가 ····· 3
3. 업무추진 여건 ····· 5

Ⅲ. 고령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및 정책 방향 ····· 6

1. 환경변화 ····· 6
2. 현장의 요구 ····· 8
3. 정책 방향 ····· 10

Ⅳ. 비전 및 전략 ····· 11

Ⅴ. 정책과제 ····· 12

1.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····· 12
2. 재취업 및 능력개발지원 강화 ····· 15
3. 일자리 · 창업 기회 확대 ····· 21
4. 고용안전망 강화 ····· 24
5.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 ····· 27

Ⅵ. 추진체계 ····· 29

[붙임 1] 기대효과 ····· 30

[붙임 2] 과제별 추진계획 ····· 31

Ⅰ. 추진 배경

□ **[인구구조]** 한국은 **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**되면서 **'25년**에 **초고령사회**(20.6%)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

* 고령사회→초고령사회(고령자비중 20% 이상) 도달년수 : (獨)36년 (美)15년 (日)10년 (韓)7년

○ **생산연령인구**(15~64세)는 '19년을 정점으로 **매년 감소**하여, '50년에는 '19년 대비 **1β 이상 감소** 전망

* 생산연령인구(만명): ('19) 3,763, ('25) 3,561, ('30) 3,381, ('40) 2,852, ('50) 2,419

○ 그 결과, **중위연령 상승**('22년 45세 → '70년 62.2세), **노년부양비 증가** ('22년 24.6명 → '70년 100.6명) 등으로 **성장 잠재력 약화** 우려

□ **[고용상황]** 고령자(55세 이상) **취업자 수, 고용률은 지속 증가***, **'22년 고령층 경제활동이 활발**해지면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

* 취업자 수 증감(만명): ('17) 39.5 ('18) 30.2 ('19) 36.3 ('20) 30.6 ('21) 28.3 ('22) 53.1
고용률(%): ('17) 49.5 ('18) 49.4 ('19) 50.1 ('20) 50.2 ('21) 50.2 ('22) 51.7

○ 향후,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('22년 900만명 → '30년 734만명, 15~29세) **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** 전망

○ 교육·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,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**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**

* 국민연금 수급연령: ('13) 61세 → ('18) 62세 → ('23) 63세 → ('28) 64세 → ('33) 65세
공무원연금 수급연령: ('22) 61세 → ('24) 62세 → ('27) 63세 → ('30) 64세 → ('33) 65세

□ **[고령자 정책]**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**고용상 연령차별 금지, 정년 60세 의무화**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, 초고령사회 대비에는 한계

* 연령차별 금지 및 구제절차 도입('09),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('16~), 기업의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('20),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반 구축 등

❖ 그간의 **정책성과**를 평가하여 **미흡한 점은 보완**하면서 **초고령사회**에 **대응**할 수 있는 **「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」 수립**

Ⅱ. 그간의 고령자 고용정책 평가 및 업무추진여건

1 고령자 고용동향

□ **[총괄]** 지난 10년간('11~'22년) 55세 이상 **취업자 수가 계속**하여 증가하면서 **고용률**도 꾸준히 **증가**하는 추세

* 55세+ 취업자 수 증감(만명): ('11) 31.9 ('13) 37.1 ('15) 31.1 ('17) 39.5 ('19) 36.3 ('22) 53.1
55세+ 고용률(%): ('11) 45.3 ('13) 47.4 ('15) 48.3 ('17) 49.5 ('19) 50.1 ('22) 51.7

○ 특히, **여성 고령층 경제활동이 활발**해지면서 고령 여성의 고용률이 큰 폭('12년 34.8% → '22년 41.7%)으로 증가

최근 10년간 연령별 고용률 변화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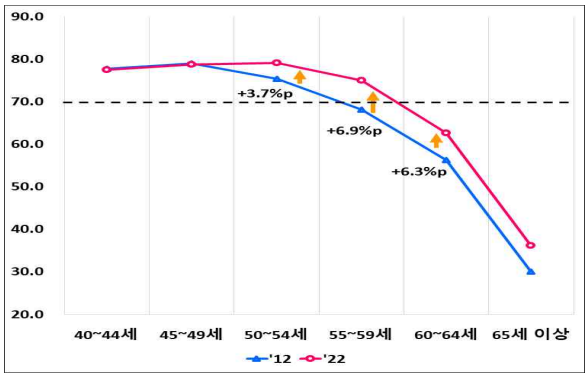

* 출처: 경제활동인구조사, 통계청

최근 10년간 여성 연령별 고용률 변화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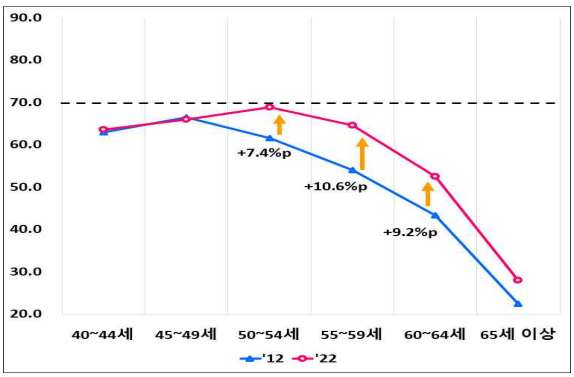

* 출처: 경제활동인구조사, 통계청

□ **[산업 · 직업별]** (산업)**보건사회복지·제조·농림어업**, (직업)**단순노무, 서비스, 농림어업**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나, **연령층별 상이**

○ **50대 후반·60대**는 '**보건사회복지, 제조**', **70세 이상**은 '**보건사회복지, 농림어업, 공공행정**'에서 취업자 수 증가

- 그 결과 **50대 후반·60대**는 **민간**부문 취업자 비중이 높고, **70세 이상**으로 갈수록 **공공·보건복지 부문 취업자 비중**이 **상승**

* 고령층 연령별 '민간 vs 공공행정·보건복지' 분야 취업자 비중(%, '22년)
▲(50대 후반) 86.7 vs 13.3 ▲(60대) 88.4 vs 11.6 ▲(70+) 70.5 vs 29.5

○ **50대 후반**에는 '**서비스·전문가**' 중심으로 **취업자 수가 증가**하나, **70세 이상**은 '**단순노무**'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

주요 산업·직업별 취업자 증감('17~'22년, 천명)

50대 후반 **60대** **70세 이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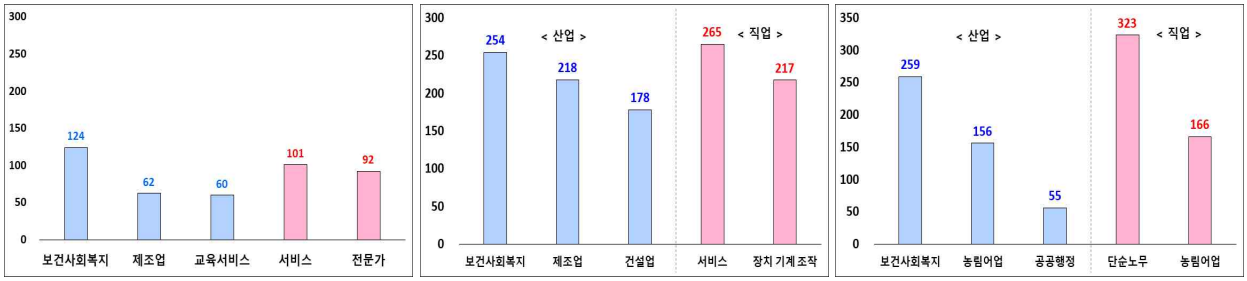

* 출처: 경제활동인구조사, 통계청

□ **[종사상지위]** 55세 이상 **고령층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였으나,** 여전히 타 연령 대비 **임시·일용직, 비임금근로자** 비중이 높음

* 종사상지위 비중(15~54 vs 55+, %): (임시·일용) 17.4 vs 27.8 (비임금) 17.1 vs 37.1('22, 통계청)

○ 지난 10여년간 고령층의 **자영업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**

연령별 종사상 지위 비중(%) **55세 이상 종사상 지위별 비중(%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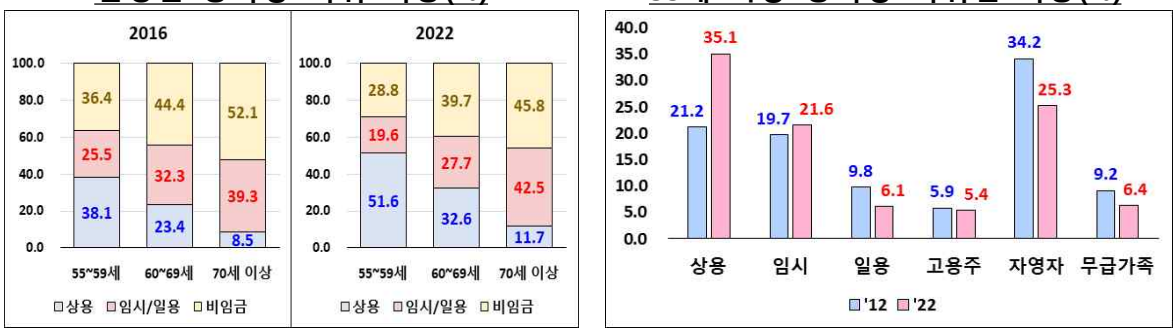

* 출처: 경제활동인구조사, 통계청 * 출처: 경제활동인구조사, 통계청

2 주요 정책 평가

□ **[정년 의무화]** **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단기간에 급격***하게 도입되어 **현장의 혼란****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강구

* ('13.5월) 법 개정→('16년) 300인이상 기업, 공공기관 → ('17년) 300인미만 기업, 국가·지자체

** '13년 법 개정 당시, 300인 이상 기업 대다수(60%)가 58세 또는 55세를 정년으로 두었으나, 약 2년 6개월만('16년~)에 정년을 2~5세 연장

○ 노사의 자율적인 **임금체계 개편 지원***과 함께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**'임금피크제 지원금'** 등 **재정지원** 병행

*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('15.10월), 「임금피크제·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안내서」('16.5월)

○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 **고령층 고용이** 대체로 **증가***하였으나

* KDI 한요셉('19), 노동연구원 이병희('20), 노동연구원 정진호('20) 등

- 단기간 급격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**일부 고령층 조기퇴직,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감소** 등의 부작용도 발생

* 정년연장 폭이 큰 기업에서 고령층 조기퇴직 발생, 정년연장으로 1명의 고령자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 고용 0.2명 감소('19, KDI 한요셉)

□ **(노인일자리)** 노인일자리 **사업 규모**('13년 26.2만개→'22년 84.5만개) 및 **수행기관**('18년 1,266개→'22년 1,301개) 확대 등 사업의 양적·질적 개선

○ 베이비붐 세대 역량·경험을 활용하는 **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**('19년)

○ 다만, **공공형** 노인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**단순 일자리**가 **증가**했다는 비판이 있어 **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형으로 전환 필요**

□ **(창업지원)** **퇴직인력에 대한 창업교육, 기술창업 지원 강화**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중장년 기술창업은 증가추세*

* 기술창업 증가율('19년→'21년) : 청년기업 3.5%, 중장년기업 11.9%('21년 창업기업동향)

○ 다만, 중장년 퇴직인력의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**중장년에 특화된 정부지원은 부족**한 상황

* 시니어 창업자 대상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문제점(%, '22.4월 산업연구원)
▲정부지원제도 부족: 58.1 ▲지원제도 잘 모름: 23.4 ▲신청 절차 복잡: 13.5

□ **(능력개발)** **폴리텍 '신중년 특화과정 개설'('18), 디지털 기초 역량 교육**(K-Digital Credit, '21년) 등 훈련 참여 기회 확대

○ 직업훈련 참여자 중 **50세 이상 비중 증가 및 취업률 상승**

* (참여 비중, %) ▲실업자: '16년 15.4 → '22.11월 29.1 ▲재직자: '16년 14.0 → '22.11월 27.4
(취업률, %) ▲내일배움카드: '16년 46.2→ '21년 51.2 ▲국기훈련: '16년 54.4 → '21년 70.7

○ 여전히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**훈련 참여가 부족***한 편

* (30대) 24.3%, (40대) 22.4%, (50대) 17.0%, (60세 이상) 10.6% ('22.11월, 고용부 소관 직업훈련)

□ **[재취업]** 대기업(1,000인 이상) 퇴직예정자 대상 **재취업지원 의무화**('20년~), **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**를 통한 **중소기업** 퇴직자 재취업서비스 강화

○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**고용서비스의 양과 질이 부족***

*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, 고용센터 등 고령자 대상 고용서비스 연계 미흡,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

□ **[소득보장]** **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***, **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** 법적 근거 마련('21년), **실업급여** 개편**('19년) 등 소득보장체계 강화

* ('14.7) 20만원 → ('18.9) 25만원 → ('19.4~'21) 30만원(단계적 추진) → ('22.1) 30.75만원
**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온 경우,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지급

○ 고령층 중 여전히 다수가 **노후준비**가 **미흡하여, 퇴직 후 적정 소득을 보장**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지속 필요

* 은퇴연령층(66세 이상) 상대적 빈곤율(%): 한국 39.3('21년), OECD 13.1('21.7월 발표 기준)

3 업무추진 여건

□ **[경기여건]** **'23년**에는 세계경제 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로 **성장률**이 **둔화***되고, **취업자 증가폭도 축소****될 것으로 전망

* '22→'23년 성장전망(%, OECD) : (세계경제) 3.1 → 2.2 (美) 1.8 → 0.5 (유로) 3.3 → 0.5
** `22→`23년 기관 전망(만명): (KDI) 79 → 8.0 (한은) 82 → 9 (노동연) 83 → 8.9

□ **[고용전망]** 고령층 인구증가에도 불구, **제조업·건설업*** 등 **50·60대**가 주로 종사하는 **업종의 어려움**으로 활발한 **이·전직** 예상

*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: ▲('22.12) 71 (전월대비 △3p) ▲('23.1) 68 (△1p) (한국은행)
건설투자 전망: ▲('22년) △3.0% ▲('23년) △0.4% 전망 ('23년 경제정책방향, 기재부)

○ 한편, **70세 이상**은 고령화에 따른 **보건복지** 분야 성장, **노인일자리 확대*** 등으로 **경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**으로 전망

* ('22년) 84.5만개 → ('23년) 88.3만개 (+3.8만개)

☞ **고령층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경기 불확실성 등에 대비한 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등에 정책역량 집중**

Ⅲ. 고령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및 정책방향

1 환경변화

1 [인구구조] 고령화 심화, 낮은 55~64세 고용률

□ **[고령화 심화]**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**'30년에 인구 4명 중 1명, '39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** 고령자 전망*

* 65+ 인구 비중(%): ('22) 17.5 → ('25) 20.6 → ('30) 25.5 → ('39) 33.7 → ('50) 40.1

○ **베이비붐 세대**(55~63년생, 710만명)의 70대 진입('25년~)이 시작되면서 **▲50·60대 인구감소, ▲70대 인구증가** 등 **고령층內 고령화**도 심화

* 50대는 '25년, 60대는 '30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며, 70세 이상은 지속 증가

○ **소규모, 운수창고·숙박음식·제조업** 등을 중심으로 **인력난 심각**

* 규모별 부족률(%): ▲300인 미만: 3.7 ▲300인 이상: 1.6 (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)

** 산업별 부족률(%): ▲운수창고: 6.5 ▲숙박음식: 5.3 ▲제조업: 4.2 ▲정보통신: 4.2

□ **[낮은 고용률]** **65세 이상** 고용률은 **연금소득 부족**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로 우리나라가 **매우 높은 수준***

* 65세 이상 고용률(%, '21년): 대한민국 34.9, OECD 평균 15.0 (OECD 1위)

○ 그러나, **55~64세** 고용률은 **고령화율이 높은 독일, 일본*** 등 다른 OECD 국가 대비 **낮은 편**으로 **핵심 노동인력으로 활용** 필요

* ▲65세+ 인구비율(%): 일본 29.9, 독일 22.4, 네덜란드 20.3, 한국 17.5('22년 기준, 통계청·UN)

세부 고령층 인구 증감율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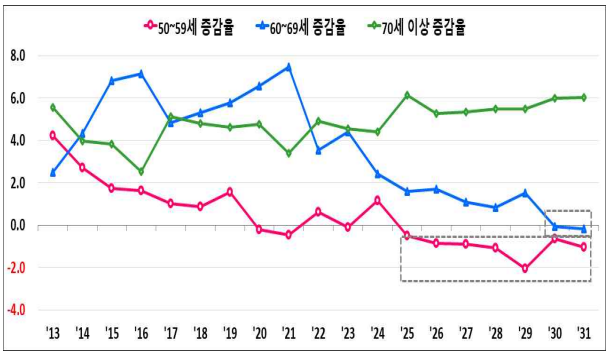

* 자료 : 통계청, 장래인구추계

55~64세 고용률 국제 비교('21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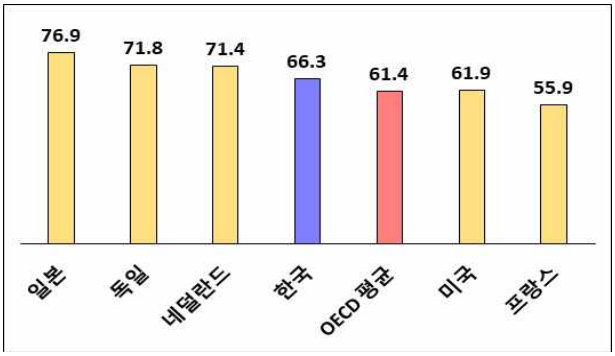

* OECD(stats.OECD.org)

☞ **고령층이 노동시장의 「핵심 노동인력」으로 변화 →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필요**

2 [연령별 특징] 고령층 연령대별로 취업의지, 희망 일자리 등 상이

□ **[5060세대]** '23년에는 **베이비붐 세대**(55~63년생) 모두가 60대에 진입하면서 이전 노년세대와는 **재취업 의지** 등에서 **다른 특징**을 보임

○ 교육·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**베이비붐 세대**는 기존 노년세대보다 **일자리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은 편**

* 현재 일자리 지속 의지(50대, %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아영, '20년)
▲희망함: ('10년) 78.7 → ('19) 89.3 ▲희망하지 않음: ('10년) 12.3 → ('19년) 3.3

○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에서도 **중장년들의 높은 성실성, 기술·경험 활용** 등으로 인해 **경영성과에 도움**이 되었다는 인식(69.9%)

* 중장년 채용기업이 말하는 장점(%,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, '19)
▲업무 충성도로 알하는 분위기 쇄신 29.8 ▲노하우·경험 전수로 직원들 업무역량제고 27.8 등

55세~64세 학력별 취업자 비중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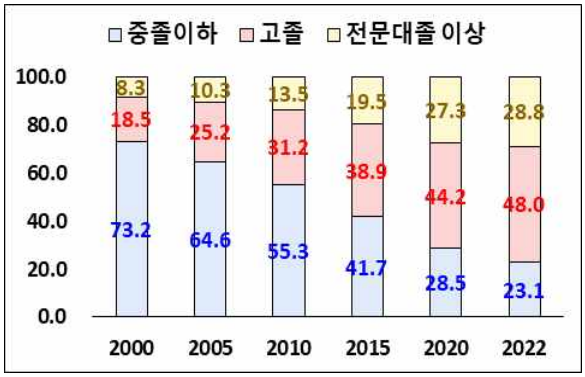

*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각년도

60세이상 생활비 마련방법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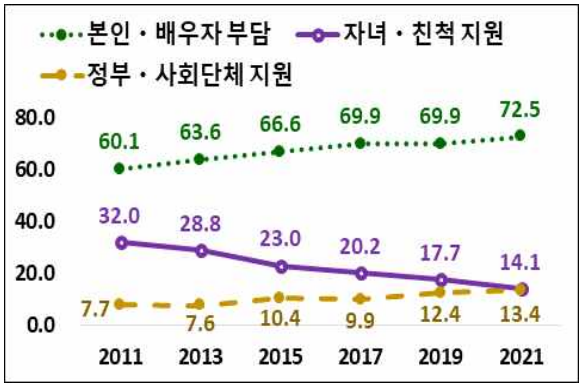

자료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 각년도

□ **[노령층]** 고령층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**건강·돌봄** 등의 이유로 긴 시간보다는 **짧은 시간 근무**하는 것을 **선호**

* 연령계층별 시간제 희망 비율(%, '22.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)
▲(55~59세) 32.7 ▲(60~64세) 42.3 ▲(65~69세) 51.3 ▲(70~74세) 66.2 ▲(75~79세) 79.7

○ 고령층은 짧게나마 **일, 사회활동 등에 참여**함으로써 **삶의 보람, 소속감** 등을 느끼고, 우울감 해소 등 전반적인 **삶의 질 개선**

* (우울의심군 비율) 노인일자리 참여자: 7.2% vs 미참여자: 32.3%('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)

☞ **고령층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, ❶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가진 중장년층(50·60대), ❷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원하는 노령층별 맞춤형 재취업지원 필요**

2 현장의 요구

1 (근로자)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기 위한 기반 조성 희망

□ **고령층의 장래 근로희망 비율**은 지속적으로 증가('22년, 68.5%)하고 있으며, 오랜 기간 **노동시장에 잔류**(평균 73세)하기를 희망

○ **정년연장**을 희망하는 비율(83.4%, 20~60대)도 **높은 편**이고, 그 외 **고용기회 확대**, 퇴직후 **취·창업** 등을 위한 정부지원도 요구*

* 희망 노후지원 정책(%): ▲**고용기회 확대: 19.7** ▲치매·독거노인 돌봄: 18.9% ▲소득지원: 14.1% ▲ **퇴직후 취·창업: 11.7** 順(「사회복지 대국민 인식조사('20)」, 복지부)

장래 근로 희망(55~79세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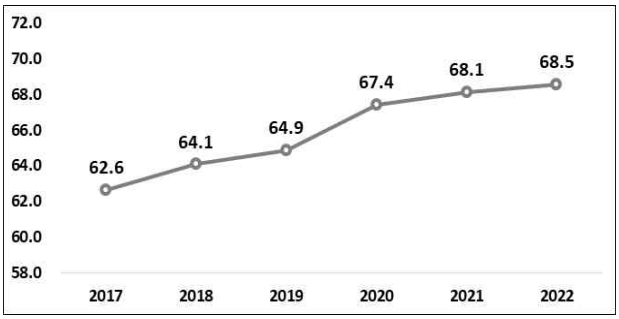

* 출처: 통계청,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

정년연장에 대한 인식(20~69세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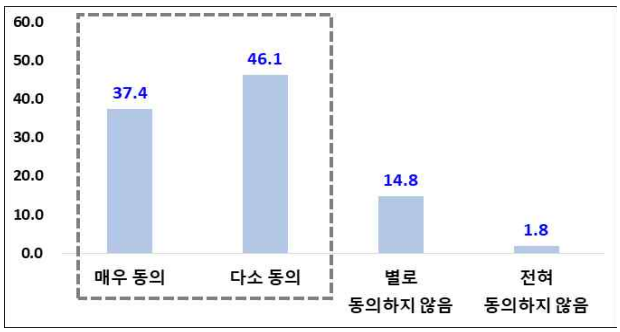

* 출처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'21년

2 (기업)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환경 조성 요구

□ 경영계는 **고령인력 활용 확대**를 위해 **정부 인건비 지원**, 노동시장 **유연성** 제고를 위한 **법·제도 개선, 세제 혜택** 등을 요구

*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('21.12월, 경총, %):
▲인건비 지원 28.1 ▲근로계약 다양성 확보 위한 법제도 개선 25.9 ▲고령자 채용시 세제 혜택 16.5

○ 한편, **연공성 위주의 임금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**, 조직내 인사적체 등의 이유로 **정년연장을 부담스러워하며**

* 60세 초과 정년연장 부담 여부('21.12월, 경총, %):
▲부담됨: 58.2(매우 부담: 11.0, 부담: 47.2) ▲부담안됨: 41.8(전혀안됨 6.8, 부담안됨 35.0)

- '23년 **임금체계 개편(36.9%), 정년연장(19.3%)**을 임·단협 쟁점으로 예상('22.12, 경총)

참고1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

❖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**정년·연금수급연령 조정, 고용지원금, 연령차별 해소**(정년제 폐지)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중

일본	❶ **(정년)** 법적 정년은 60세(`98~ ) →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* 의무(`06~) → **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**** 노력(`21.4월~) * 정년연장, 정년 폐지, 재고용 중 하나를 도입할 것을 기업에 의무 ** 기존 고용확보조치(정년연장· 폐지, 재고용) 외에 '직접(특수관계사 포함) 고용의무 아닌 타 사업장으로 재취업, 사회공헌 등까지 범위 확대 ❷ **(고용촉진)** 지원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, 고령자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 환경 조성 등 컨설팅도 제공 - (사업주) 65세이상 **고용촉진조성금**(계속고용촉진, 고용관리개선, 무기고용전환 등), 전문가를 활용하여 인사관리, 임금체계 정비, 직무개발 등 컨설팅 제공 - (근로자) **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**(60세 이후 임금 25%이상 감소시 최대 15% 지급) ❸ **(고용보험)**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(일시금) 지급('84~) → **65세 신규 취업자**에게도 **실업급여** 지급('17년~) * 기여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일, 1년 이상이면 50일에 상응하는 일시금 지급, 1회 한정
독일	❶ **(노령연금 수급연령)**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**67세까지 상향**(~'31) ❷ **(고용촉진)** 기간제 계약조건 완화 연령 하향조정(58→52세), 직업능력개발 요건 완화, 고령자 고용장려금*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촉진 * 장기실업, 공공근로 참여 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- **조기연금 수령자**들의 **추가소득 구간을 유연하게 상향 조정***하여 근로연장 및 재취업 장려 * 조기연금수령자 중 완전연금수령자의 추가소득제한선을 월 450유로에서 월 525유로로 상향
영국	❶ **(정년)** 법정 정년제 폐지('11년), 공적연금 수급연령은 66세에서 **68세로 상향**(~'46) ❷ **(고용촉진)** Fuller Working Lives 프로그램: **유연근무제**도 활용 강화, 고령자 **고용유지** 및 **재취업** 촉진, 고령자 유연근무제 컨설팅 등 추진 - 국가연금 소득제한 폐지('89) 후, 연금수급개시연령(SPa) 이상 고령 근로자는 **연금수령액 삭감 없이 노동 참여** 가능
싱가포르	❶ **(정년) 63세**('22.7월~), '30년까지 **65세**로 연장 - **(재고용기회 부여의무) 68세**('22.7월~), '30년까지 **70세**로 연장 ❷ **(고용촉진)** 고령고용크레딧*(Senior Employment Credit) 제도, Senior Worker Early Adopter Grant** 등의 **지원금** 지급 * 사업주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시 임금의 최대 8%를 지급 ** 기업이 법정 정년보다 높게 정년, 재고용 연령을 설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

3 정책 방향

❖ **초고령화사회** 대비, 고령층이 **노동시장내 핵심인력**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**"재직·전직·사회공헌"** 등 全 영역에서 지원 강화

❶ 재직단계: **자율적** 계속고용 유도, **사회적 논의**를 통해 **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도입** 추진

❷ 전직·실직: **연령**(50·60대, 노령층)별 특성에 맞는 **맞춤형** 재취업·창업 서비스를 통한 효과 극대화

❸ 사회공헌: 다양한 **경력 활용 일자리** 제공을 통해 전문인력의 기술·경험 전수 활성화

❖ **경기 불활실성**에 대비하여 원활하게 직무전환, 이·전직을 할 수 있도록 **재취업·직업훈련 강화**

❖ **고용상 연령차별**을 유발하는 **제도·사회적 요인을 제거**(Fight against ageism)하기 위한 **법·제도적 기반 구축**

	AS-IS		TO-BE
사회변화	• 고령사회('18년~)	➡	• 초고령사회 ('25년 예상)
고령층 변화	• 상대적 저학력, 노후준비 부족	➡	• 상대적 고학력, 건강수준 향상 • 경제적 자립성 증가
계속 고용	• 연공형 임금체계에서의 급격한 정년 의무화	➡	• 임금체계 개편 기반의 계속고용
정책수단	• 재정 등 직접적 개입	➡	• 계속고용우수사례 발굴 • 연령차별 해소 등 자율적 고용 유도
고용서비스	• 고용복지+센터 역할 미흡, 전달체계간 기능 중복	➡	• 고용복지+센터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• 전달체계간 역할 명확화

Ⅳ. 비전 및 전략

비전

연령에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현

추진과제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1.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
2. 직무・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
3.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추진과제② 재취업 및 능력개발지원 강화

1.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
2.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
3.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

추진과제③ 일자리・창업 기회 확대

1. 일자리 기회 확대
2. 사회기여 활동 지원 활성화
3. 기술창업 지원 강화

추진과제④ 고용안전망 강화

1.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
2.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
3.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
4. 안전한 일터 조성

추진과제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

1. 연령차별 없는 노동시장 구현
2. 고령자 통계 등 개선
3. 「고령자고용법」 개정

Ⅴ. 정책 과제

1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◈ 노사가 협력하여 기업상황에 맞게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(Best Practice) 확산 및 재정지원 확대

◈ 직무·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"계속고용 로드맵" 마련

1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

□ **(노사협력 도입 지원)**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정년연장,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**사례 확산 및 지원 확대**

○ 매년 300인 이상 기업의 **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실태**(임금수준, 직무·근로시간 변화 등)**를 조사**하여 자율적 계속고용 유도('23년~)

* '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'를 통해 규모·산업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, 임금·직무 변화 등의 재고용 실태에 대해서는 미조사 → 별도조사를 통해 보완

< **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 운영 비율**(%, 상용 1인 이상) >

'18.6월	'19.6월	'20.6월	'21.6월	'22.6월
28.8	28.9	24.1	27.2	31.3

* 출처: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, 고용부

○ 매년 **기업의 정년실태조사**를 통해 **업종, 규모별** 정년 현황 파악

☑ **'21년도 정년(300인이상) 실태조사 결과(고용부)**

▪ 단일정년제 사업장 중 **61세 이상 정년 채택사업장 6.8%** (204/3,018)
- 300~499인 8.6%, 500~999인 5.3%, 1,000인 이상 5.4%가 61세 이상 정년

▪ '21년 **58개소가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**
- 300~499인 32개소, 500~999인 18개소, 1,000인 이상 8개소

○ **단체협약·취업규칙** 등에 **계속고용제도**를 **도입**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**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***

*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: ('22년) 108억원, 3천명 → ('23년) 268억원, 8천명

- 계속고용 기간, 고령자 계속고용 효과 등에 따른 **지원기간 차등 검토**

□ **(자율확산 지원)** **우수사례 발굴·포상** 등을 통해 자발적인 고령자 고용 유도

○ 계속고용, 세대상생,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등 기업의 고령자 **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** 시스템 구축('23)

* 고령층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가칭 "세대동행 기업 인증제" 도입 검토('24)

☑ **계속고용제도 우수 사례**

- **[크라운제과]** ❶정년 2차례 연장('14년 57→60세, '16년 62세) ❷정년 도달한 근로자 의사에 따라 3년간 재고용 보장(現 16명 정년후 재고용) ❸퇴직후 경제적 자립 위한 진로상담, 재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제공
- **[한라시멘트]** ❶'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도록 노·사간 합의 ('21년 15명 재고용) ❷'22년에는 특정 공정 유경험 퇴직자 22명 재고용 등

2 직무 ·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

□ **[지원체계 마련]**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, 정책 권고 등 **임금체계 개편을 지원**하는 **「상생임금위원회」** 설치

□ **[개편 지원]** 직무·성과 중심 **임금체계 개편 기업** 대상 **지원방안*** **검토**

* ▲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기준 마련('23.1분기)
▲일터혁신 컨설팅 등 각종 정부 지원 시 우선 선정

○ **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*** 등 **'임금체계 구축 패키지' 신설**(1,200개)

* (건수) '22년 570건 → '23년 1,200건, (내용) 개편 논의-착수-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

○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직무별 시장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**'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' 구축**('23년말)

☑ **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**

- **(정보제공 내용)** 직무수행 시 필요한 지식, 기술, 능력, 업무역량, 교육수준, 업무환경, 임금정보 및 직업전망 등 제공

  * 현 직업 중·소분류 임금정보를 **세분류 단위**까지 **단계적 확대**(현 96개 → 240~250개 직종)

- **(기대효과)** 직무별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은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및 임금 대외경쟁력 확보, 일반 국민은 직업·진로 선택, 능력개발 등에 활용 가능

3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□ **[사회적 논의]** 경사노위 고령사회연구회('22.2월), 미래노동시장 연구회('22.12월) 논의를 토대로 **노사와 협의하여 사회적 논의 신속히 추진**

<사회적 논의 사항(안)>

- **(계속고용)** 재고용, 정년연장,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 방식
- **(임금체계)** 직무·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
- **(법 · 제도 정비)** 고령자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·직무 등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
- **(도입일정)** 연금수급연령, 기업의 계속고용 운영실태 등을 고려
- **(유형별 차등)** 기업규모, 유형별(민간,공공) 도입시기 차등 여부
- **(세제 · 재정 지원)** 제도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, 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

○ 사회적 논의결과를 반영하여, **"계속고용 로드맵" 마련**('23년말)

➡ **경사노위 논의체 구성**('23.1분기) → **사회적 논의** 본격화('23.2분기) → **계속고용 로드맵 마련**('23년말)

□ **[정부지원]** 일본·독일 등 **해외사례 연구**, 기업의 **자율적인 정년연장, 재고용 등의 사례 조사***를 통해 사회적 논의 지원

* 재고용 형태, 임금 수준, 직무 및 근로시간 변화 등

○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**정년연장** 등에 대한 **국민 인식조사** (필요성, 방향성 등) 실시('23년~)

○ 계속고용제도 관련 **법적 쟁점** 및 **세제·재정지원 방안 병행 검토**

☑ **정년 관련 해외 동향**

- **(일본)** 법적 정년은 60세,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의무화(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 중 선택),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 노력조항(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, 사회공헌 등) 규정
- **(미국·영국)** 연령차별 예방의 일환으로 정년폐지
- **(싱가포르)** 법적 정년은 63세('30년까지 65세로 연장), 재고용기회부여의무 68세('30년 70세)
- **(동남아시아)** 베트남: 60세/55세('19년기준, 남/여) → (남) '28년까지 62세 (여) '35년까지 60세
  인도네시아: 57세('19년기준) → '43년까지 65세(매3년마다 1년씩 연장)

2 재취업 및 능력개발지원 강화

◈ 고용복지+센터 중심으로 중장년센터-자치단체 연계, 취업지원 강화
◈ 자치단체, 중장년센터를 통해 고령자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프로그램 지원 확대
◈ 기존 직업훈련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고령자 훈련 참여 확대
◈ 노령층(65세 이상): 공익활동, 일자리 및 재능 나눔 등 사회활동 지원 강화

1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

(1) 고용복지+센터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□ [오프라인] 고용복지+센터 중심의 고용-복지 융합서비스 제공*, 중장년내일센터·지자체 등 연계 강화

* (現) 고용복지+센터별 중장년내일센터 담당자가 일부 배치, 독립적 업무 수행 → (改) 권역내 중장년센터 전체 및 지자체 복지 담당자 배치, 특화서비스 제공

<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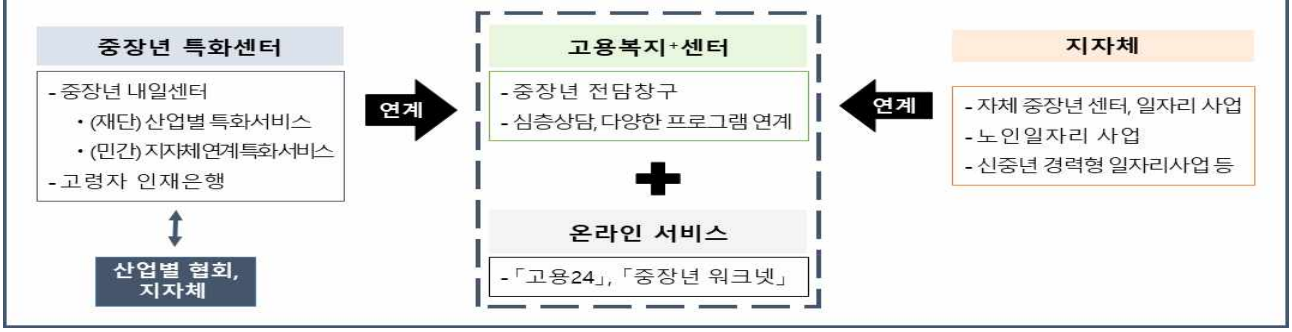

❶ [고용복지+센터] 고용센터를 방문한 고령층에게 '심층상담-진단-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'을 패키지로 지원

○ (밀착지원) 전담상담사가 참여자의 참여목적, 기대수준 등 요구사항 진단

* 상담으로 돌봄·간병·주거 등 취업외 어려움 파악시, 지자체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

○ (맞춤형 프로그램) 중장년센터와 연계하여 고용센터내 「중장년 전담창구*」를 설치하고,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심층상담

* (現) 29개 중장년센터에서 46개 고용센터에 1명 위주로 입주 → (改) 예산상황 등을 고려, 중장년센터(민간)에서 고용센터에 전체 또는 2명 이상 우선 입주 추진

- **중장년센터**의 **특화프로그램**을 재구조화하여 **중장년 유형***에 따라 **맞춤형 프로그램을** 단계별로 제공

* ▲실업급여 수급자→ 실업 인정기간 中 참여 가능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▲국취제도 참여자→Ⅰ·Ⅱ 유형에 따라 참여 가능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☑ **중장년 재취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**

- **중장년센터 프로그램**(생애설계, 전직, 재취업)**을 세분화 및 재구조화(2~3시간)**하고, **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과 연계**하여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설계
-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**'실습형 프로그램'** 위주 지원

❷ **[중장년센터]** 유사·중복 업무를 수행하던 **중장년센터**(31개소)를 기관(민간, 노사발전재단)별 장점*을 살려 **중점기능 명확화·강화**

* ▲민간: 지역거점, 기업 네트워킹 능력 ▲노발재단: 광역별 거점,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능력

○ **[민간]** 지역경총, 지역상공회의소 등(19개소)이 고용센터, 지자체, 회원 기업과 연계하여 **지역특성**에 맞는 **취·창업지원서비스 특화**

- 일부 센터(4개)에서 추진하고 있는 **「지자체 협업모델」**을 **19개 전체 민간 중장년센터**로 확대하여 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 제공

☑ **지자체-중장년내일센터 협업 사례**

<충청북도-충북 중장년내일센터>

- **사업:** 취업 희망 소상공인을 직업훈련 제공 후 취업연계, 지게차 운전, 보건 관련 교육 등 지역 특화 직업훈련 개발 및 운영
- **역할: (중장년센터)** 재취업 컨설팅, 생애경력설계, 취업알선 + **(충북도)** 직업교육, 구인기업발굴

○ **[노사발전재단]** **중장년 대상** 고용서비스 강화, **산업별 특화**서비스 제공

- **[고용서비스]** 심층 컨설팅 지원, **기초역량진단**을 통한 **중장년 기초역량증진 프로그램**(직업정보향상 교육 등) 등 제공

- **[산업특화]** 지역별 **중점산업**(예: 부산: 해운업) 현황을 반영, **산업별 협회** 등과 함께 **산업별 직무훈련을** 제공하는 등 원활한 전직지원

* (現) **자동차**(인천, 전북), **해운·항만**(부산), **관광**(제주) 등 일부 센터에서 운영 →
(改) **전체(12개소) 확대**, **특화훈련**[직업탐색교육 및 직무훈련] **등 추가**

《 (예시) 부산센터 해운항만물류업 특화서비스 》

- **[문화]** 중장년센터내 **'중장년 청춘공간'**을 **마련**하고, **인문, 여가, 문화**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**신설**(고용부-문체부 협업, '23년~)

❸ **[중앙·지자체 협력]** **지자체**가 운영하는 **중장년 고용촉진** 사업 **현황을 파악***하고, 민간 중장년센터 중심으로 연계 협업 강화

* 광역·기초 지자체 중장년 고용촉진사업 실태조사('23.3월~) 실시

- 17개 광역 지자체-중앙정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례회의 추진(年 2회)

○ 지자체가 **지역 실정에 맞게 고령자 고용촉진 등 다양한 사업**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**법적 근거** 마련(「고령자고용법」 '23년~)

(2) 다양한 고용정보를 담은 누리집 구축

□ **온라인 고용센터**(「고용24」)를 구축, **취업지원·훈련상담·고용지원금** 등 **민원**을 **한곳**에서 **신청·처리**('24~)

□ 기존의 다소 복잡했던 **고령자 누리집**(3개)을 **'중장년워크넷**(구직등록 등)' 및 '**e-중장년**(e러닝 컨텐츠)'로 단순화(2개)하고, 편의성 제고

* [現] ❶장년넷(구직등록 등) ❷중장년 step(생애설계 이러닝 등) ❸온라인중장년센터(기능 없음) →(改) ❶중장년워크넷(구직등록, 일자리 정보 등), ❷e-중장년(통합 e-러닝 교육시스템 등)

○ 일자리 위주 정보를 제공하는 '**중장년워크넷**'을 **중장년 대상 고용정책을 통합 안내**하는 누리집으로 개편('23년~)

* 부처별·지자체 시행 중장년 정책, 취·창업 정보 및 알선, 고용장려금 사업 등

(3) 고용서비스 기반 정비

□ 기관별로 자체기관명(예: 지역경총)을 사용하여 혼란 가중, 「중장년내일센터」로 **브랜드화**하여 센터 인지도 강화('23년~)

○ 「고령자고용법」 내 **중장년내일센터의 법적 근거**를 명확히 하고, 고령자 전달체계도 정비*('23년)

* ①고령자 고용정보센터(제10조), ②고령자인재은행(제11조), ③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(제11조의2) ⇒ 가칭'중장년내일센터'로 일원화

2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

□ **[맞춤형 프로그램]** 자치단체 중장년 취업지원기관, 중장년센터를 통해 **중장년 특성에 맞는 교육·훈련 프로그램** 지원 확대

○ **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훈련프로그램**을 중장년워크넷을 통해 안내

☑ **자치단체 훈련프로그램 예시**

- **울산:** 40대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(스마트공정제어, 동력설비공사실무, 미래모빌리티부품제작 등)
- **서울:**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전문 특화 기술 일자리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장년 세대의 직업능력개발지원(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, 장노년 디지털 전환교육 등 미래사회 대응 기술교육 등)
- **대구:** 실직, 조기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(만40세~59세) 취업 및 전직·전환 지원(리스타트 4050 채용연계 일자리지원사업)

○ 중장년센터에서 **기초 훈련*** 실시 후 직업훈련과 연계

* (부산) 해운.항만 분야 직업탐색교육 및 직무훈련, (제주, 충북) 트레블헬퍼.보건 인력 등 지역 특화 직업훈련, (서울) 금융 분야 전직 직무훈련 등

□ **[훈련기회 확대]** 중장년층 **수요 맞춤형**으로 **직업훈련을 개선**하여 **직업훈련과정에 중장년층**이 보다 **많이 참여**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○ **[내일배움카드]**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적절한 **직업훈련**을 선택할 수 있도록 **상담지원 및 취업연계 지속 강화**('23년 전체 78만명)

*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실시현황('22, 만명): (전체) 94.0 (50대) 18.0 (60대) 10.4

○ **[특화훈련]** 신중년의 전직·창업 등을 위한 **교육훈련 지속 확대***, **디지털 전환 지원**을 위한 특화과정 **신규 개설**(Dx-Academy 2개, '24년~)

*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: ('20년) 700명 → ('21년) 900명 → ('22년) 2,500명 → ('23년) 2,500명

- **신중년 특화과정**에 중장년센터의 **생애경력설계 과정 의무** 편성, 수료 후 중장년센터 연계를 통해 **재취업지원 신설**('23년~)

○ **[디지털훈련]**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**K-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고령자**까지 확대

* ('21년) 청년 대상에서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까지 확대 → ('22.7월~) 55세 이상 고령자 등 확대

-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중장년층에게 **기본적인 디지털-리터러시 과정**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('23년~)

○ **[훈련참여 유인제공]** 부양 경감을 위해 **직업훈련 참여자 생계비 대부** 활성화, 재직자 훈련 참여독려를 위한 **장기유급휴가 훈련 확대 검토**

* 생계비대부 지원조건: 국기훈련 등 장기훈련과정 참여시 (現) 중위소득 80% 이하 →(改) 100% 이하
재직자 장기유급휴가 조건: (現) 고용위기업종 → (改) 전 업종

☞ **중장년 직업훈련 확대 등을 포함, 「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」 마련('23.上)**

3 (노령층)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

□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**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**하고, **사회서비스·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**<복지부>

❶ **[공익활동형]** 환경정화 등 **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**하고, **사회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**(돌봄, 안전 등) 중심으로 전환('23년 60.8만개)

* (현재) 공익활동 중 **거리환경개선 유형**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
→ (개선) 돌봄, 안전, 환경 등 유형 중심으로 전환

- 활동처가 부족한 **농어촌 지역**이나 취업이 힘든 고령자들을 공익활동형 대상자로 **우선 고려**하여 사각지대 방지

❷ **[사회서비스형]** 신노년세대의 경험·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의 일자리 지속 발굴('23년 8.5만개)

* ('19) 2만개/3.7%→ ('20) 3.7만개/5%→ ('21) 5.5만개/6.7%→ ('22) 7만개/8.3%

** (예) ▲한국가스안전공사(취약계층 가스안전점검) 등 공공기관 협업 일자리 ▲지역아동센터,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등 돌봄과 연계한 일자리 ▲연안 안전 지키미 등 지역 인프라 활용 일자리

- 돌봄시설 등 **사회복지시설과 연계 및 공공기관 협업***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 발굴·확대

* (예시) '시니어 연금 가이드' 등 대면 방문 비중이 높은 고령층 대상 효과적 민원 안내

-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 **외부 재원을 활용**하여 **노인에게는 인건비**를, **지역사회**에는 **공공서비스**를 제공하는 선도모델 사업 추진

☑ **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예시**

- **(국민건강보험공단)** 건강보험 민원상담,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등 업무 수행
  * (외부자원 규모) 73억, (임금 수준) 월 200만원(11개월), 344명
- **(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)**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 지역 문화·관광산업 활성화
  * (외부자원 규모) 8.5억, (임금 수준) 월 190만원(9개월), 50명

❸ **[민간형]**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**민간기업 취업 지원** 및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**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***('23년 19만개)

* ('19) 10.3만개/16%→ ('20) 13만개/17.6%→('21) 15만 개/18.3%→ ('22) 16.7만 개/19.8%

- 노인의 근로능력·근로희망시간 등을 고려한 **노인 적합 직종*** **발굴** 및 **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검토**

* 노인 취업이 저조하나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/직무 개발 및 선정

- 노인생산품 **공공기관 우선구매** 지표 반영, **오픈마켓** 판매 채널 활성화 등 **판로개척 지원**을 통한 **시장형 사업단 지원 강화**

- 기업 사회공헌 등 연계 및 **민간영역 참여 확대**를 위한 **홍보 강화**

3 일자리 · 창업 기회 확대

◈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에게 훈련·알선·지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
◈ 퇴직전문인력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
◈ 중장년층이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'창업자 발굴–역량강화–성장지원' 등 창업 전 과정 지원

1 일자리 기회 확대

□ **[패키지 지원]** 중장년센터가 **사업주** 수요에 따라 「①**일자리컨설팅**-②**맞춤형 훈련**-③**채용지원**」 통합 제공('23년~, 360개소)

○ 신규·계속 고용지원 등 일자리 발굴 및 **장려금 등과 연계**

☑ **사업주 지원 패키지 사례**

- **(동양시스템즈(주))** 금융웹개발자 채용지원 요청→ 교육대상자 선발(금융권 퇴직자 20명) 지원 및 기초교육(재도약프로그램) 제공→ IT개발자 직무교육(사업주)→ 면접 후 채용(12명)
- **(CGV(주))** 60세 이상 매표발권, 매점판매, 상영관 정리 등 인력 채용지원 요청→ 지원자 모집 및 채용지원 서비스(1:1면접 컨설팅, 동행면접 등) 제공→ 면접 후 전국 137명 채용

□ **[신규채용]** **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대폭 확대**('22년 54억원→ '23년 558억원)하여 기업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 완화

□ **[산업전환]** 디지털 전환 등 **산업구조 변화**로 실직 위기가 발생시 근로자들이 **신속히 재취업**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('23년 2,300명)

*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심화·전환 교육훈련·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(최대 300만원)

○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근로자·기업·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「**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**」 제정 추진

○ **지방관서-중장년센터**간 협업을 통해, **대량 해고자 발생 예정**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으로 **전직스쿨 프로그램** 등 실시

- 폐업,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해고자 발생예정 기업 지방관서 신고→ 중장년센터에서 **동종업계 구인 발굴 및 채용행사** 등 재취업지원

2 사회기여 활동 지원 활성화

□ **[사회공헌활동 정보제공]** 전문인력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**정보 통합 제공**('23년 ~)

○ 각 부처, 지자체 등의 **사회공헌활동 정보***를 **'중장년 워크넷', 중장년센터** 등을 통해 **안내**하고, 정보 지속 업데이트

* (예)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, 신중년 자원봉사, 부산시 휴먼북도서관 등

□ **[전문성 활용기회 확대]** 퇴직전문인력 등이 자신의 노하우를 **지역사회, 기업, 학교 등 사회에 환원**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

○ **[지역사회]** 퇴직전문인력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 **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**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화('23년 3천명)

- 참여자를 대상으로 **일경험·고용서비스 연계**로 민간분야 재취업 촉진

* 사업 종료 전 생애경력설계 참여 의무화, 미취업시 전직스쿨·재도약 프로그램 등 연계

☑ **'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' 지역서비스 예시**

- **(경기도)** 지역 내 청년 창업기업 지속 증가 → 대기업 및 중소기업 기업경영이 있는 퇴직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지역 내 청년창업가 대상 아이템 발굴 등 창업 멘토링 실시
- **(부산시)** 도시 안전 관리 인력 필요 → 드론자격증 보유한 신중년을 활용하여 산불점검·해수욕장 안전 관리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지원

○ **[기업]** 전문성을 보유한 **산업 전문가**가 **1:1 맞춤형 지원**을 통해 **지역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**해주는 **기술닥터제*** 운영<중기부>

* 기업 사전진단, 사업화·디자인, 마케팅 등 1:1 컨설팅 지원

- **AI, 5G, 메타버스** 등 정보통신기술(ICT) 분야 창업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**선배 벤처인** 등을 **전문멘토**로 활용(ICT 혁신기업 멘토링, '23년 29억원)<과기부>

-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**공공연구기관 퇴직연구인력 등을** 중소·중견기업과 매칭하여 **애로기술 해결** 지원('23년 5.44억원)<산업부>

○ **[학교 등]**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을 **「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」**로 선정, **특성화고 학생,** 중소기업 등 대상 맞춤형 **기술 전수**('23년 103억원)

* (중소기업) 현장기술 전수, 경영·인적자원 관리 진단·지도 등('22년 1,602개소)
(특성화고 등) 현장실습 지도, 동아리반 기술 (실습) 지원('22년 414개소)

- **연구기관, 대학** 등에서 **퇴직한 과학기술인**들이 과학인을 꿈꾸는 **청소년**에게 지식 멘토링, 과학특강 등 제공('23년 1.49억원)**<과기부>**

3 기술창업 지원 강화 **<중기부·특허청>**

1 **[창업자 발굴]** **민간기업**에서 전문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중장년을 **기술창업가로 육성**하기 위한 발굴 프로그램 운영

○ **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이수**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**창업희망자를 발굴**, 교육·멘토링 등 창업준비 지원(중기부-고용부)

* 폴리텍 재학생 대상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창업프로그램 홍보, 지역기관간 협업 강화

○ 기업의 자체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, **중장년의 사내벤처 사업 참여시 우대**(가점)

2 **[창업역량 강화]** 중장년이 준비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, **체계적 창업준비 교육**과 지식재산권(IP) 기반 창업자 육성 지원

○ 퇴직예정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**출·퇴근길 창업프로그램*** 운영

* '출근길' 온라인 교육과 '퇴근길' 오프라인(전국 34개 중장년기술창업센터) 교육 제공

○ 중장년 창업자의 **지식재산권 기반 창업 활성화**를 위해 창업자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(중기부-특허청 협업*)

* 창업자 공동 발굴→창업 인프라 지원(중기부) + IP(지식재산권) 확보 및 사업화 지원(특허청)

3 **[맞춤형 성장지원]**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**애로사항 극복·시장안착** 유도

○ 판로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업종별 유통 전문가 매칭, **중장년 창업기업 구매상담회 및 유통플랫폼 입점** 지원

○ 창업 경험이 있는 중장년이 재도전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**재창업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**('23년 30개사, 기업당 최대 1.5억원)

○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내 **중장년 창업기업 애로상담 창구**를 상시 운영(사업모델 개발, 아이템 검증, 판로개척 등 유형별 지원)

4 고용안전망 강화

◈ **중소·중견 기업이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자율적으로 재취업서비스(진로설계, 취업알선, 교육 등)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신설**
◈ **계속고용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 검토**
◈ **연금개혁 등을 통해 퇴직근로자 노후소득의 다층적 보장 강화**

1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

□ **[기업지원 강화]** '20.5월부터 **1,000인 이상 기업**이 **비자발적**(정년 등) **이직예정자**에게 **재취업지원서비스*** **제공**을 하도록 **의무화**

* 진로·생애경력설계, 취업알선, 교육훈련(재취업·창업 등) 등 제공

○ 직종별 재취업지원서비스 **프로그램 개발·보급,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**('23년 400개소), 기업 **인사담당자 특화 교육**(700명) 등 지원

○ 의무대상이 아닌 **중소·중견기업**도 노사가 협력하여 **자율적**으로 재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**정부지원 신설**('23년~)

* 300~999인 기업이 사업 컨설팅 참여 후,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시 비용 일부 지원

☑ **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 사례**

▪ **프로그래밍 서비스업체**인 A사는 ▲의무화전부터 재취업서비스 도입, ▲진로설계 등 3개의 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제공, ▲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, ▲기업 ESG 평가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사항 반영하여 공시

□ **[실효성 제고]** 서비스 제공 실태점검을 강화하고, 운영기준을 조정

○ 매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**이행상황을 점검**하여,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**이행 지도**('23년~)

- 제도 성과(참여율, 이행율 등)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지속 반영

○ 서비스 운영 기준시간, 취업알선 횟수 조정 등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**서비스 운영기준 상향 추진**('24년)

* (예) ▲진로설계: 16시간 이상 → 24시간 이상 ▲재취업알선: 2회 이상 → 3회 이상

2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

□ **[취업취약계층 보호]**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**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 고령자** 별도 정의하여 지원('23년 「고령자고용법」 개정)

* (日) 고령자(55세+), 중고령자(45세+) 외 중고령실업자(45~64세 실업자, 장애인(65세 미만) 실업자 등) 규정

○ **학력·경력 부족, 산업전환** 등으로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**고용정책에서 우대**(정부지원 법적 근거 마련)**하는 방안 검토**

□ **[실업급여]** **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**를 바탕으로 **65세 이상 신규 취업자**에 대한 **실업급여 적용방안** 검토

*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: ('20) 83천명 → ('21) 99천명 → ('22) 99천명
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: ('20) 851천명 → ('21) 918천명 → ('22) 1,038천명

○ **해외사례, 고용보험 재정상황** 등을 고려하면서, 국민연금 등 **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,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 체계 필요성** 등을 종합적으로 **검토**

☑ **일본의 실업급여 사례** * 「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국가비교 연구」(한국노동연구원, '21년)

■ **일반 피보험자 vs 고연령구직자급부(65세 이상) 비교**

❶ 수급요건: 이직일 전 2년 중 12개월 이상 피보험기간 vs 이직일 전 1년 중 6개월 이상
❷ 수급일수: 4주 단위 지급, 90~150일 vs 일시금, 피보험기간에 따라 30~50일분
❸ 구직활동 의무: 구직활동 의무 부과 vs 미부과

3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

□ **[퇴직연금]** 퇴직연금 **가입확대**(의무화 등), **연금성 강화** 등을 위한 제도 개편 추진

○ 퇴직금을 폐지하고 **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**하되, **중소기업 부담 완화**를 위해 **조기도입 인센티브 지원** 병행 검토

○ **중도인출 최소화,** 퇴직연금 가입시 중소기업 근로자 등 **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,** 융자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방안 마련

☞ 퇴직연금 의무화, 연금성 강화 등을 담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'23)

□ **[국민연금]** **적정 노후소득 보장** 및 **지속가능성**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

○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의 **재정안정성 제고, 노후소득 보장 강화**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제5차 재정계산 실시('22.8월~)

* 국회 연금개혁특위(4대 공적연금, 기초연금 개선 논의를 위해 구성)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중

○ 국민연금 **재정추계 결과**를 **도출**(~'23.3월)하고,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**'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'** 수립(~'23.10월)

□ **[연금통계]** 고령자의 은퇴후 소득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모든 연금자료를 연계한 **포괄적 연금통계 개발**('23.10) **<통계청>**

* 기초연금, 국민연금, 직역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, 주택연금, 농지연금 등 각 부처 모든 연금데이터 통합 제공 → 금융·보험사 등 민간의 고령친화 금융상품 개발기회 제공

4 안전한 일터 조성

□ **[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]**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**중소기업, 건설·제조** 등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강화

○ 고위험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**'진단-시설개선-컨설팅'**을 **종합지원**하는 「가칭 **안전일터 패키지**」 프로그램 제공('24년~)

* 안전보건 기초진단 – 기초 유해위험요인 컨설팅- 시설개선 지원 –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심층 컨설팅

- (건설)붕괴 징후 감지센서, AI CCTV 등을 건설현장에 지원('23, 국토부), (제조)제조안전기술개발지원사업*'의 성과확산 및 고도화('23, 산업부)

* 철강·조선·뿌리·유화업종의 작업환경에 맞춘 Fail Safe 기술개발 지원사업

□ **[맞춤형 산재예방] 고령 근로자의 특성** 등을 **반영**한 안전과 건강 기술 지원

○ **직무 위험도** 분석을 통해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「가칭**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**」(例) 안전보건기준, 작업속도 등) 마련('23.)

○ **직업성 암**의 조기 발견·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**건강관리카드** 대상 **확대**(例: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 등, '23~)

☞ **「중대재해감축 로드맵」 기발표('22.11.30.)**

5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

◈ 연령에 상관없이 능력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인식개선 홍보 강화
◈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여 적극적인 차별시정 도모

1 연령차별 없는 노동시장 구현

□ **[연령차별 예방] 사회적 편견** 등에 따라 발생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소하고자 **사회 인식 개선 추진, 직무능력정보 제공시스템 구축**

○ **[인식개선] 연령 차별없는 일터 조성**을 위한 TV·영상광고*, 온라인 웹툰 등 온·오프라인 **홍보**를 통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

* '나! 이만큼 능력있는 사람, 나이만큼 능력있는 사람' 광고 송출 중('22.12~'23.1)

☑ **연령차별 인식개선 방송사례**

-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**인용사례, 판단기준** 등을 담은 **사례집 배포**('23)

○ **[직무능력정보]** 교육·훈련·자격 등으로 취득한 **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,** 취업·인사배치 **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** 구축('23.下)

* NCS를 중심으로 개인이 교육과정, 직업훈련, 자격 등으로 학습한 직무역량과 실제 근무를 통해 축적한 경력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·축적 → 이력 증빙 등에 활용

□ **[구제절차 개선]** 근로자가 보다 **쉽게 연령차별 구제를 신청**하고, **실질적으로 구제**받을 수 있도록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

○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,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('22.5) 등으로 **연령차별 관련 사회적 관심** 및 **분쟁이 증가**할 것으로 예상

- 현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**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**

* 언론('22.6월)에서는 現구제절차인 인권위의 고용상 연령차별 진정 결정례(16건)의 대다수(12건)가 "재발방지대책 마련" 등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체성이 없음을 지적

☑ **고용상 연령차별 실태조사('22년)**

- 고령자 67.5%가 연령차별을 경험하였으나, 구제절차를 진행한 사람은 14.2%에 불과
-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로 '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(38.8%)', '절차가 번거롭고 귀찮아서(27.3%), 차별시정 제도 존재를 몰라서(18.7%)' 順

○ 구제절차의 **편의성, 신속성, 실효성**을 높이기 위하여 **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요구권** 신설* 추진('23년)

* 「기간제법」, 「남녀고용평등법」상 차별구제 절차를 준용

2 고령자 통계 등 개선

□ **[경제활동인구조사]** 조사 표본규모를 확대하여, **70세 이상 고용통계를 70~74세, 75세 이상으로 세분화**하고, 제공지표* 확대('24년)**<통계청>**

* 새로운 연령 구간에 따른 구간별 취업자수·실업률, 지역별·성별 현황 등

○ **주된 일자리** 중심의 **'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'**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**개편 추진**('23년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, '24년 항목 확정 및 조사 추진)

□ **[고령자패널조사]** 신규 구축된 **고령화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**하여 퇴직이 본격화된 **2차 베이비부머**(64~76년생) **고용 심층분석**('23년~)

* 은퇴, 재취업, 노후준비 등 고령층 노동시장 퇴장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

3 「고령자고용법」 개정

□ 「고령자고용법」 개정으로 연령차별 금지('08), 정년 60세 의무화('13) 등을 도입하였으나, **고령층의 다양한 고용정책 수요 대응에 미흡**

* ('02)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 원칙,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근거 신설 → ('06) 기본계획 수립,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, 각종 고용촉진 지원 근거신설 → ('08) 연령차별 금지 및 구제절차 → ('13) 정년 60세 의무화 → ('19)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

○ 고령층 **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, 연령차별 시정** 등을 **체계적**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**법 개정 추진**(개정안 국회 제출, '23.下)

<「고령자고용법」 개정 주요 검토사항>

○ **(고령자 범위)** 학력·경력 부족, 산업전환 등으로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등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정의,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○ **(고용서비스)**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를 시군구 등 지자체까지 확대, 중장년내일센터 근거 규정 명확화 등

○ **(구제절차)**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요구권 신설

○ **(고용촉진제도)**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기준고용률(제조업 2% 등) 이상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규정(기준고용률) 삭제

Ⅵ. 추진체계

□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, **「고용정책심의회」**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, 추진성과 모니터링

□ **노·사, 전문가, 관계부처**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·보완 및 추가가 필요한 과제는 **세부 개선안 마련 및 과제 조정 추진**

□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**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」**에서 세부과제 논의

붙임 1 기대효과

□ 전체 **55세 이상 고령자** 외에 **중장년층**(55~64세)에 대한 효과 예상

❶ **(55세+)** 최근 10년('12~'19, 코로나기간 제외)간 **고용률 증감 연평균**(0.6%p)을 적용할 경우 **'27년** 예상되는 고용률은 **53.8% 수준**

* 최근 10년('12~'19년, '20~'22년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제외)간 연평균 고용률 증감: 0.6%p

- '23년은 경기 불확실성 증대,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'27년 54.3%(+0.5%p) 기대

⇒ **55세 이상 고용률: '21년 50.2% → '27년 54.3%**

❷ **(55~64세)** 최근 10년('12~'19, 코로나기간 제외)간 고용률 연평균 증감폭(0.6%p)을 고려하면, **'27년에는 69.8%** 달성 예측

- **G7 국가 고용률***, 중장년층의 **적극적 취업 의지, 정부의 정책적 의지** 등을 고려하여 고용률 증가 기대(+1.2%p)

* G7 중 우리나라보다 고용률이 높은 일본(76.9%), 독일(71.8%)의 평균 고용률(74.4%)을 장기적으로 고려

** ('22년 55~64세 고용률, %): (6월) 70.1 → (9월) 69.6 → (11월) 70.3 → (12월) 68.9

⇒ **55~64세 고용률: '21년 66.3% → '27년 71.0%**

55세 이상 고용률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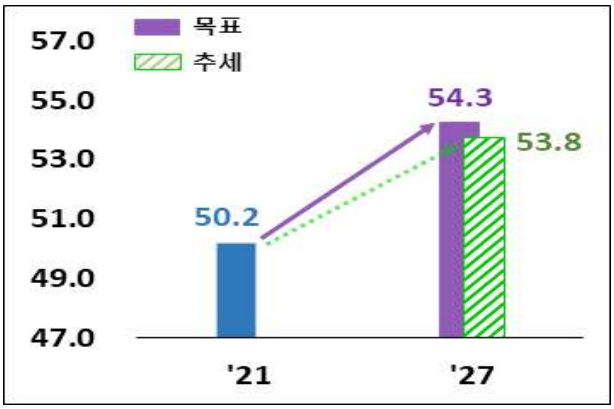

55~64세 고용률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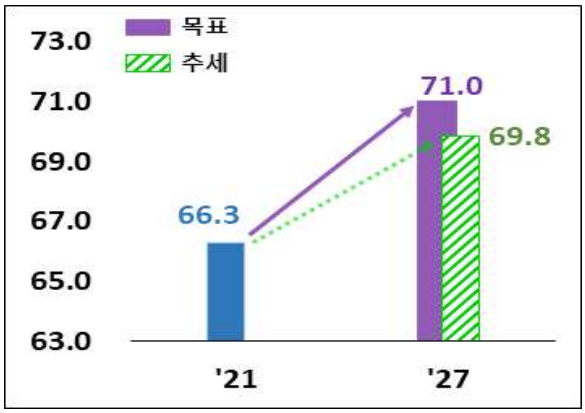

* 출처: 경제활동인구조사, 통계청

붙임 2 **과제별 추진계획**

추진과제	담당부처	일정
1.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		
1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		
노사협력 도입 지원	고용부	'23 ~
자율 확산 지원	고용부	'23 ~
2 직무·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		
지원체계 마련	고용부	'23
개편 지원	고용부	'23 ~
3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		
사회적 논의 추진	고용부	'23 ~
사회적 논의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검토	고용부	'23 ~
2. 재취업 및 능력개발지원 강화		
1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		
고용복지+센터 중심으로 중장년센터·지자체 연계 강화	고용부	'23 ~
다양한 고용정보를 담은 누리집 구축	고용부	'23 ~
고용서비스 기반 정비	고용부	'23 ~
2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		
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확대	고용부	'23 ~
훈련기회 확대	고용부	'23 ~
3 (노령층)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		
공익활동형 일자리 개선	복지부	'23 ~
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속 발굴	복지부	'23 ~
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	복지부	'23 ~
3. 일자리·창업 기회 확대		
1 일자리 기회 확대		
사업주 패키지 지원	고용부	'23 ~
고령자 고용지원금 확대	고용부	'23 ~
산업전환 지원	고용부	'23 ~
2 사회기여 활동 지원 활성화		
사회공헌활동 정보제공	고용부	'23 ~
(지역사회)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내실화	고용부	'23 ~
(기업) 전문인력이 기업 어려움 해결 지원	중기부, 과기부, 산업부	'23 ~
(학교 등) 특성화고, 청소년 등 멘토링 등	고용부, 과기부	'23 ~

추진과제	담당부처	일정
3 기술창업 지원 강화		
예비 창업자 발굴	중기부	'23 ~
창업역량 강화	중기부·특허청	'23 ~
맞춤형 성장지원	중기부	'23 ~

4. 고용안전망 강화

1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		
기업지원 강화	고용부	'23 ~
제도 실효성 제고	고용부	'23 ~
2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		
취업취약계층 보호	고용부	'23 ~
실업급여 적용방안 검토	고용부	'23 ~
3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		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	고용부	'23년
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	복지부	~ '23.10월
연금통계 개발	통계청	~ '23.10월
4 안전한 일터 조성		
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	고용부·국토부·산업부	'23 ~
맞춤형 산재예방	고용부	'23 ~

5.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 인프라 구축

1 연령차별 없는 노동시장 구현		
연령차별 예방	고용부	'23 ~
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	고용부	'23 ~
2 고령자 통계 등 개선		
경제활동인구조사 개선	통계청	'24 ~
고령자 패널조사 고용 심층분석	고용부	'23 ~
3 「고령자고용법」 개정		
「고령자고용법」 개정	고용부	'23 ~